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77
----------	-------

발의연월일 : 2026. 6. 24.

발 의 자 : 이달희 · 강선영 · 안철수
강명구 · 서천호 · 박형수
박충권 · 김예지 · 김정재
박상웅 의원(10인)

제안이유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출소 후 변동사항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아직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무기한’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7헌바479)이 있었음.

해당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적 공백 방지를 위하여 2023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대상 법률조항들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개선입법 기한으로부터 약 3년여가 경과한 지금까지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임.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의 상한을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에 적정한 범위에서 정하고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의 갱신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변동신고의무기간의 상한 설정(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에 변동이 있을 때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간의 상한을 보안관찰해당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범죄는 30년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인 범죄는 20년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5년 미만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인 범죄는 10년으로 각각 정함.

나. 변동신고의무기간의 갱신에 관한 심사 절차 마련(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고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동신고의무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

다. 변동신고의무의 해제 및 취소 제도 신설(안 제6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것 등

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동신고의무기간 만료 전에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변동신고의무기간 만료 전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것 등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의무기간은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새로 진행하도록 함.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保安觀察法”을 “보안관찰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라 거소를 제공받은 사람이 주거지를 이전할 때에는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지는 기간(이하 “변동신고의무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보안관찰해당범죄: 30년
2. 제1호 외의 보안관찰해당범죄로서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인 보안관찰해당범죄: 20년
3. 제1호 외의 보안관찰해당범죄로서 법정형의 하한이 5년 미만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인 보안관찰해당범죄: 10년

③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의무기간을 갱신하는 결정(이하 “변동신고의무기간 갱신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할 것
2.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것

④ 법무부장관은 변동신고의무기간 만료 전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변동신고의무를 해제하는 결정(이하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변동신고의무기간 만료 전에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변동신고의무해제 취소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의무기간은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⑦ 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의무기간 갱신결정의 청구와 결정, 제4항에 따른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의 청구와 결정 및 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의무해제 취소결정의 청구와 결정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안관찰처분청구”는 “변동신고의무기간 갱신결정의 청구,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의 청구 또는 변동신고의무해제 취소결정의 청구”로, “보안관찰처분청구서”는 “그 청구서”로, “보안관찰처분을 청구받은 자”는 “변동신고의무기간 갱신결정,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 또는 변동신고의무해제 취소결정을 청구받은 자”로, “보안관찰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는 “변동신고의무기간 갱신결정,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 또는 변동신고의무해제 취소결정을 필요로 하는 자료”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 변동신고의무기간 갱신결정,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 변동신고의무해제 취소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保安觀察處分에”를 “보안관찰처분 및 변동신고의무기간에”로, “事案을 審議”를 “사항을 심의”로, “議決하기”를 “의결하기”로, “法務部에 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를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로, “委員會”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委員會는”을 “위원회는”으로, “各號의 事案을 審議”를 “각 호

의 사항을 심의”로, “議決한다”를 “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保安觀察處分”을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으로, “棄却의 決定”을 “기각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갱신 결정
3. 변동신고의무기간 갱신결정
4.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 또는 변동신고의무해제 취소결정
5. 면제결정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면제결정의 취소
6. 제16조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제25조제1항 전단 중 “保安觀察處分の 期間은 保安觀察處分 決定을 執行하는”을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집행하는”으로, “計算한다”를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初日は 算入한다”를 “첫날은 산입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변동신고의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계산한다.
이 경우 첫날은 산입한다.
1. 제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변동신고의무기간: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날
 2.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변동신고의무기간: 변동신고의무해제 취소결정을 통보받은 날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0萬원”을 “1,000만 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50萬원”을 “500만 원”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그 신고를 할 때에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그 신고를 할 때에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그 신고를 할 때에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변동신고의무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6조의2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25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되어 이 법 시행 당시 면제결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변동신고의무기간에 대한 특례) ① 제6조의 2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변동신고의무기간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때에 만료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동신고의무기간이 지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조 제2항에 따른 변동신고의무기간 갱신결정 또는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통보받은 때
2.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동신고의무기간이 만료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이 되는 날

②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동신고의무기간 갱신결정을 하거나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변동신고의무기간 갱신결정을 청구하거나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변동신고의무기간 갱신결정을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의무기간은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새로 진행된다. 이 경우 첫날은 산입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保安觀察法</u></p> <p>第6條(保安觀察處分對象者の 申告) ① (생략)</p> <p>② <u>保安觀察處分對象者は 矯導所등에서 出所한 후 第1項의 申告事項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變動이 있는 날부터 7日이내에 그 變動된 사항을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u></p> <p><u>다만, 第20條第3項에 의하여 居所제공을 받은 者が 住居地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管轄警察署長에게 第18條第4項 但書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u></p> <p>③ (생략)</p> <p><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보안관찰법</u></p> <p>第6條(保安觀察處分對象者の 申告) ①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6조의2(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變動신고)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變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變動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라 거소를 제공받은 사람이 주거지를 이전할 때에는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지는 기간(이하 “변동신고의무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보안관찰해당범죄: 30년

2. 제1호 외의 보안관찰해당범죄로서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인 보안관찰해당범죄: 20년

3. 제1호 외의 보안관찰해당범죄로서 법정형의 하한이 5년 미만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인 보안관찰해당범죄: 10년

③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보안관

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의무기간을 갱신하는 결정(이하 “변동신고의무기간 갱신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할 것

2.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것

④ 법무부장관은 변동신고의무기간 만료 전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변동신고의무를 해제하는 결정(이하 “변동신고의무해제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변동신고의무해제결정을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변동신고의무기간 만료 전에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변동신고의무해제 취소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의무 기간은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⑦ 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의무 기간 갱신결정의 청구와 결정, 제4항에 따른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의 청구와 결정 및 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의무해제 취소결정의 청구와 결정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안관찰처분청구”는 “변동신고의무기간 갱신결정의 청구,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의 청구 또는 변동신고의무해제 취소결정의 청구”로, “보안관찰처분청

구서”는 “그 청구서”로, “보안관찰처분을 청구받은 자”는 “변동신고의무기간 갱신결정,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 또는 변동신고의무해제 취소결정을 청구받은 자”로, “보안관찰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는 “변동신고의무기간 갱신결정,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 또는 변동신고의무해제 취소결정을 필요로 하는 자료”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 변동신고의무기간 갱신결정,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 변동신고의무해제 취소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2條(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

① 保安觀察處分에 관한 事案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法務部에 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 ⑧ (생략)

⑨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案

第12條(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

① 보안관찰처분 및 변동신고의무기간에-----사항을 심의의결하기-----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위원회-----.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위원회는-----각 호의 사

을 審議·議決한다.

1. 保安觀察處分 또는 그 棄却의 決定

2. 免除 또는 그 取消決定

3. 保安觀察處分の 取消 또는 期間의 更新決定

<신 설>

<신 설>

<신 설>

⑩ · ⑪ (생 략)

第25條(期間의 計算) ① 保安觀察處分の 期間은 保安觀察處分 決定을 執行하는 날부터 計算한다. 이 경우 初日은 算入한다.

② · ③ (생 략)

<신 설>

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 처분-----기각의 결정

2.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 처분의 기간 갱신 결정

3. 변동신고의무기간 갱신결정

4.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 또는 변동신고의무해제 취소결정

5. 면제결정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면제결정의 취소

6. 제16조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⑩ · ⑪ (현행과 같음)

第25條(期間의 計算) ① 보안관찰 처분의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집행하는-----계산한다. -----첫날은 산입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변동신고의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계산한다. 이 경우 첫날은 산입한다.

1. 제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변동신고의무기간: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날

第27條(罰則) ① (생략)

② 정당한 이유없이 第6條第1項·第2項 및 第18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또는 그 申告를 함에 있어서 居住豫定地나 住居地를 명시하지 아니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2.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변동 신고의무기간: 변동신고의무 해제 취소결정을 통보받은 날

第27條(罰則)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그 신고를 할 때에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그 신고를 할 때에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그 신고를 할 때에 거주예정

<p>③ 정당한 이유없이 第19條第2項의 措置에 위반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u>50萬원</u>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④ 第20條第4項에 위반한 者는 6月 이하의 懲役 또는 <u>50萬원</u>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⑤ ~ ⑦ (생략)</p>	<p><u>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사람</u></p> <p>③ ----- ----- -----<u>1,000만원</u>----- -----.</p> <p>④ ----- -----<u>500만</u> <u>원</u>-----.</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	---